

의안번호	2203175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4.09.06.
추계번호	24C30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1항)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u>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 ※ 단서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조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²⁾에

1)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따라 학교의 설립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규모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또한,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교사, 복합시설,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교구, 급수·온수공급시설 등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설비의 경우 학교별 특성 등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완화된 설립 기준의 내용과 이의 적용을 받을 소규모학교의 증감여부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 관련된 사항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지역별 여건이 달라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 시행 이후 설립될 소규모학교의 기준 등은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적용될 완화된 설립 기준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임
 - －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된 설립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다면 추가재정소요 변동은 크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 17. (생략)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⁴⁾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보다 완화된 기준을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시·도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신설 학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완화된 설립기준과 다른 설립기준을 규정할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학교 신설 여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소규모 학교의 기준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완화된 설립 기준의 내용과 소규모학교의 기준 및 이에 따른 학교 수 증감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4) 개정안의 제안이유 : (중략)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이하 생략)